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변종오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친환경적 성격의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충북 탄소 배출 감축과 도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 주체와 내용을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법제명 등을 알맞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 주체와 내용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법제명 등을 수정함

## 5. 검토내용

###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에서 ‘전기자전거’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12. 1. 13. 충청북도조례 제3435호로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상의 위임범위와 일치시키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주요 내용 검토

- 현행 조례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입 법 평 가 >	
총 합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적법함. 다만, 일부 조항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상 위임범위, 시·군 조례와 중복성 검토 등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li> <li>- 도지사, 시장·군수는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 시장·군수 삭제 검토</li> <li>○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나 일부 혼란방지를 위해 본칙 수정을 권고함.</li> <li>- "장"구분에 대한 삭제 검토, 상위법 제명과 동일하게 띄어쓰기 정비</li> <li>○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타 시·도 조례의 일부 조항을 참고하여 추가 검토를 권고함.</li> </ul>
<b>평가결과</b>	<input type="checkbox"/> 현행유지 <input type="checkbox"/> 일반정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정권고 <input type="checkbox"/> 통합권고 <input type="checkbox"/> 폐지권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안 제2조제1호 중 자전거이용시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추가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안 제2조제1호 중 자전거이용시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추가함.
- 안 제3조, 안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4항, 안 제13조제2항, 안 제15조 각 항, 안 제16조 각 항,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 주체를 기존의 도지사,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수정함.
  - 상위법인 자전거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자전거 무단 방치 금지를 위한 처분의 시행 주체는 시장·군수이므로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비용 보조에 대한 조문 외에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기초지자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었던 사항<sup>5)</sup>을 바로 잡은 것이므로 타당함.
- 안 제4조의 주민을 도민으로 수정함.
- 안 제5조제4항은 도지사가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6조는 상위법인 자전거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5)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자 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대등한 관계임.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안 제14조는 도지사가 자전거법 제11조의4<sup>6)</sup>에 따라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시 고려할 사항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안 제17조는 도지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아닌 지원의 주체이므로 타당함.
- 안 제20조는 도지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도록 할 수 있고, 시·군에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21조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 제명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함.
- 조례안 예고(‘24. 11. 19. ~ ‘24. 11. 2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6) **자전거법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 6.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 탄소배출 감축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건강 증진 등과 같은 탄소중립 실현의 효과가 기대됨.
- 그밖에 절차적인 면에서 집행부 협의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달리 제출된 의견이 없는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